

[안내용/공개]

취득학점 포기제도 개정시행(안)

1. 개정된 취득학점포기제도 내용 (2024.03.01.일자)

: 기존 취득학점포기는 폐지과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, 대상과목이 취득과목으로 확대 개정됨

<학사운영규정> 제51조(취득학점의 포기)

- ① 이미 취득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중 6학점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교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는 'W'(Withdraw)로 표기하며,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4.3.1.>
- ② 취득학점 포기를 위해서는 등록학기 7회 이상, 102학점(제57조 제2항이 정하는 대학 (학부).학과(부)의 경우 106학점) 이상 취득한 학생으로서 소정의 기간에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취득학점 포기원은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, 포기를 철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.
- ④ 이수중인 교과목은 취득학점 포기를 할 수 없다.
- ⑤ 취득학점을 포기한 교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다.

위 개정사항은 2024.03.01.일자 기준, 기 졸업생과 수료생을 제외한 모든 학번의 재(휴)학생에 소급 적용됩니다. 그 외 기타 요건(신청 가능 학점, 신청 횟수, 신청 자격 기준 등)은 기존과 동일.

2. 제도시행안

: 2024학년도 3월 1일 시행으로 개정된 학사운영규정 제51조(취득학점 포기)에 따라 취득학점포기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예정입니다.

- 아 래 -

1. 포기대상과목 : 학점취득한 과목 (성적인정과목 포함)
2. 신청대상 : 등록학기 7회 이상, 102(106)학점 이상 취득한 재(휴)학생 (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자)
3. 포기학점 : 최대 6학점, 졸업전 1회 허용 (단, 이수 또는 재수강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.)
4. 2024-1학기 신청기간 : 5월 예정
5. 제출방법 : 포탈시스템>학적/졸업>성적사항>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 및 제출
6. 주의사항
 - ① 교양필수, 전공필수,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 불가.
 - ②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"W"로 표기한다.
 - ③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, 학점포기 신청 후 포기처리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.
 - ④ 한 번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.

※ 반드시 졸업요구학점을 확인 후 신청 요망. 학점 포기를 통해 특정학기 취득학점이 17(18) 미만이 될 경우 졸업우수생 선정(제79조, 4학년은 취득학점 제한 없음) 등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확인 후 신청

3. 특별조치사항

2024학년도 1학기에 한해, 이전에 6학점 미만으로 학점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재(휴)학생에게 한번의 신청 기회를 더 부여한다(**기 졸업생이나 수료생의 경우에는 해당없음**). 이 경우 신청 가능한 학점은 이전에 신청하여 삭제된 학점을 더하여 총 6학점 이내여야 한다.

Example

- 2024년 이전 이미 학점포기 신청하여 2학점 삭제 이력이 있는 학생 > 최대 4학점까지 한번 더 신청 가능.
- 2024년 이전 이미 학점포기 신청하여 6학점 삭제 이력이 있는 학생 > 추가기회 없음

4. FAQ

1. 교환 교류로 받은 성적도 학점포기 가능합니까?

: 네, 교과과정상 필수로 인정받은 과목이 아니라면 포기 가능합니다. 참고로 교환 교류로 인정 받은 과목은 총 이수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. 그같은 과목을 포기할시 어떤 실익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.

2. P/F 과목 중 PASS를 받은 과목도 원하면 학점포기 가능합니까?

: 네, 교과과정상 필수 과목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.

3. 재수강 중인 과목은 안되지만 재수강 이력이 있는 과목은 삭제 가능합니까?

: 네, 교과과정상 필수 과목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.

4. 졸업 마지막 학기에 이수 중인 과목은 포기할 수 없나요?

: 불가합니다, 신청기간(5월, 11월 예정)을 기준으로 이수 중인 과목은 포기 불가입니다.

5. 기존 졸업생, 수료생도 개정된 취득학점포기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?

: 불가합니다. 이미 모든 성적 내역이 확정된 졸업생과 수료생에게는 해당 규정의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.

6. F성적을 받은 과목도 학점포기 가능합니까?

: 본 제도는 취득한 학점에 대한 포기를 위함입니다. F를 받았다면 학점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애초에 학점포기 대상이 아닙니다.

2024. 3.

교 무 처 장